

□ 정부시책 □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 추진

통상산업부는 기계류·부품·소재 등 자본재분야의 세계유수의 고도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동 배경으로는 수입의존 자본재산업 및 중소기업의 취약기술부문 보강, 최근의 기술발전동향을 반영함으로써 고도기술 산업중심으로서의 산업구조조정 촉진,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금번 사업범위 조정에서는 자본재산업 고도기술분야는 물론 엔지니어링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분야, 수입선다변화품목 및 동품목의 핵심부품류까지를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로 확대키로 검토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통상산업부는 세계 유수의 고도기술 보유기업 및 우리 중소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상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

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 외국인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 100%,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한편,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주는 외국인투자촉진제도(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15조)로 '94년 도입된 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통산부가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키로 한 배경은 (1) 자본재산업 및 중소기업의 취약기술부문을 보강하고 고도기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 적극 유도 (2) 최근의 기술발전동향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3) IMF와 합의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해외기술 도

입을 원활케 하기 위함이다.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건, %)

구 분	'92	'93	'94	'95	'96	'97. 11말
금 액	648 (-39.4)	527 (-18.7)	402 (-23.7)	884 (119.9)	1,930 (118.3)	1,733 (35.0)
건 수	82 (-24.1)	80 (-2.4)	136 (70.0)	195 (43.4)	196 (0.5)	164 (-8.4)

또한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상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는 '95. 4월 조정후 개편되지 않아서 그 간의 급변하는 국내의 산업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자본재산업 관련 핵심 기술분야, 제조업관련 서비스 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최근 기술발전 동향을 고도기술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95년 이후의 각종 기술 개발 수요조사 결과, 미래기술예측보고서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품목 및

동 품목의 핵심부품류 가치를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범위는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본재 등 주요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로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3) 재료·소재분야 (4) 신물질·생물산업분야 (5) 광학·의료기기분야 (6) 항공·수송분야 (7) 환경·에너지·건설분야 등 총 7개 분야에 261개 세부기술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중기청, 연구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은 IMF 합의 이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활동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

품질원 및 11개 지방청(소)의 시험·분석설비를 완전 개방하고 연구·개발관련 시험수수료를 대폭 감면키로 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금까지는 국립기술

품질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의뢰하는 시험·분석수수료 및 설비사용료에 한하여 감면해 주고 조작성이 간단한 일부 설비만을 개방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가의 최신 고정밀 시험·연구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개방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한 시험수수료 및 설비사용료를 전액 면제함과 동시에 납품증명용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시험수수료와 설비사용료를 50% 감면키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설비 사용신청시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하여 설비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단체 또는 조합 등이 의뢰하는 시험수수료와 설비사용료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청의 전문기술인력과 시험·연구설비를 총 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中企 회생특례자금 지원조건 완화

중소기업청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이 어음부도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경우 특별 지원하는 회생특례자금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98. 2. 3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이번에 개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시 종업원수의 규모를 종전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축소하여 벤처기업 및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신청 기회를 확대함.
-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

하여 신청인이 신속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지원한도를 같은 기업당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함.
- 지원금리는 재원조달 금리의 상승을 반영하여 연 11.5%에서 연 13.5% 수준으로 조정함.

◇ 지원규모 : 총 300억원(재정 100억원, 은행 200억원)

'98년도 「100PPM상」 등 포상요령 공고

중소기업청은 품질경영촉진법 제5조의 규 「100PPM상」 및 「100PPM유공자」 포상
정에 의거 1998년도 「100PPM상」, 「100PPM」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98년도 「100PPM상」 등 포상요령 요약 >

구 분	100PPM상	100PPM 우수모기업상	100PPM 유공자
1. 목 적	품질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100PPM 품질능력을 확보하였거나, 이에 근접한 중소기업에 선발·포상함으로써 산업계에 100PPM 품질혁신 활동을 확산·보급코자 함	100PPM 품질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기술, 교육등의 각종지원 시책을 전개하여 100PPM 품질혁신운동의 확산·보급에 공이 큰 모기업을 선정·포상함으로써 동 운동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00PPM 품질혁신운동 추진에 공이 많은 사람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100PPM 품질혁신운동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100PPM 추진분위기를 제고시켜 동 운동의 확산·보급에 기여하기 위함
2. 포상훈격	대통령상	대통령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훈장 ○ 산업포장 ○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통산부장관, 중기청장)
3. 신청자격	100PPM 품질혁신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100PPM 품질능력을 확보하였거나 이에 근접한 중소기업	100PPM 품질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협력업체의 100PPM 달성을 위하여 자금, 기술등의 지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모기업	100PPM 품질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및 관련단체의 종사자로서 100PPM 품질혁신의 확산·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자
4. 신청기간	1998년 1월 30일~2월 25일	1998년 1월 30일~2월 25일	1998년 1월 30일~2월 25일

구 분	100PPM상	100PPM 우수모기업상	100PPM 유공자
5.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현황설명서 20부([별첨 1] 작성방법 참조) ③ 100PPM 품질혁신사례집 20부([별첨 2] 작성방법 참조) ④ 외부전문가 초청 지도·교육이수 현황1부 (별지 제2호 서식)	①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현황설명서 20부 ([별첨 작성방법] 참조) ③ 100PPM 품질혁신사례집 20부([별첨 2] 작성방법 참조) ④ 외부전문가 초청 지도·교육이수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① 공적조서 4부([별지 제2호] 정부지정 서식) ② 공적요약서 4부([별지 제4호] 정부지정 서식) ③ 공적약술서(채점용) 2부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6호] 지정양식(B4용지) ④ 공적내용 증빙자료 4부(A4 용지 10매 이내) ※ 공적약술서는 대표자 또는 임원은 [별지 제5호], 그 이외의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작성
6. 접수기관	100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전화 : 771-7195~8)	100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전화 : 771-7195~8)	100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전화 : 771-7195~8)
7. 심사방법	서류 및 현지심사(심사기준표 생략)	서류 및 현지심사(심사기준표 생략)	서류 및 현지심사(심사기준표 생략)
8. 시상일자	제4회 100PPM 달성 품질 세계화 전진대회 ('98. 4. 24 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2·503-7934~5, 509-7043~4)